

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26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07. 5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공직자윤리법」(법률 제8098호, 2006.12.28 공포, 2007.6.29 시행)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대상자 중 구소속공무원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,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변경(안 제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9조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생략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공직자윤리법”을 “「공직자윤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중 “서울특별시종로구 소속 공무원(이하 “구소속공무원”이라 한다)을 “서울특별시 종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중 “구소속공무원”을 “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으로 하고, 동조동항제2호중 “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”을 “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 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(구성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2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 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 의원 1 명과 <u>서울특별시종로구 소속 공무 원(이하 “구소속공무원”이라 한 다)</u>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. ② ~ ③ (생략) 제3조(기능) ① (생략) 1. ~ 5. (생략) ②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<u>구소속공무원</u>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. <u>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 무원</u>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. (생략)	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 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<u>서울특별시 종로구(이하 “구”</u> <u>라 한다) 소속 공무원</u>----- -----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제3조(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<u>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</u>----- ----- 2. <u>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</u>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